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6. 1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3년 5월 29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5회 사하구의회(임사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3. 6. 1)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와 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어린이집의 업무(안 제3조)

-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및 건강관리
-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을 실시함.

○ 어린이집의 취원대상(안 제4조)

-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 맞벌이 부부자녀, 일반가정 자녀

○ 보육료(안 제5조)

-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함

○ 위탁운영(안 제6조)

- 구청장이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에 관한 사항 등은 약정으로 체결함
-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종사자 관리(안 제11조 내지 제16조)

-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의 기본법은 영유아보육법이지만 본 법이 조례 제정을 위임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
- 사하구 보육시설이 총 51개소 중 공립이 4개, 민간 어린이집이 26개, 가정 놀이방 21개소가 있으며 이들 보육 시설 중 공립인 4개소의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나머지 민간 보육시설은 보사부 지침 등을 적용
-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보육원 취원순위, 취원자 연령연장, 보육비 수납여부 결정, 수탁자 재정능력 심의, 수탁자와의 약정해제 심의, 종사자 징계처분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회의 소집시 위원 등의 여비 및 일비 규정이 없음.
- 조례 제4조 2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를 위반한 조항으로써 법 제17조 1항에 취원순위 1항 내지 3항은 당연히 취원하도록 의무규정인데 조례 4조 2항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취원순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6. 1 김희정위원

나. 수정이유

제정 조례 제4조 2항의 내용 중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 중 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2항 “의료보호대상자 자녀” 3항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저소득층 가정자녀” 영·유아는 보육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자구 수정

다. 수정주요 골자

제4조 2항 “전항의 취원 순위는 사하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를 “전항의 4호, 5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하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수정안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 4 조(취원순위) ①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 자녀 ② 전항의 취원순위는 사하구 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근로자자녀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취원시켜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의 4호, 5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현행과 같음